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1>공 보</h1> <p>http://www.daedeok.go.kr</p>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6-20호
2026. 4. 10.(금)

차 례

조 례(1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74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75호) ... 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976호) 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77호) 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78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79호)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80호)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조례 제1981호) 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82호) 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83호) 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984호) 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조례 제1985호) 35

규 칙(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1019호) 4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대덕구 의회규칙 제58호) ... 49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덕구 의회 규칙 제59호) 52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523호) 104

공 고(2)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459호) 114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464호) 119

공 략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위촉”을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민관 유착 등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에게도 위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횟수 제한 규정을 구체화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본문 중 “별표의 선서서”를 “별표 1의 선서서”로, “별표의 선서의”를 “별표 1의 선서의”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과 태 료	
	위반횟수	금 액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회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1회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2회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1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 시 세부 기준을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17조).
-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분야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소관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소관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관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

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

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명칭의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

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분과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

원과 소관 분야의 위촉직 위원 2명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운영방식은 자문과 회의로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장이 소집한다.

제8조(자문료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존 자문 방식에 회의 방식을 추가하고,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제2조).
-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마.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바. 운영 및 자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 및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 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 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 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 한다.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제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792명”을 “7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2명”을
“2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 대응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792명 → 79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 21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시설의 위탁운영 기관 범위 및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따라야 할 조례를 추가·정비함으로써, 청년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년시설 위탁운영 기관에 대덕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함(제16조제2항).
- 나. 청년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따라야 할 조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함(제16조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8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을 통해 제출”을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을 거치도록 규정한 현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제1조).

나.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절차를 간소화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8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8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을 “절감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축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축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온실가스·에너지”를 “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기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에너지기자재”를 “에너지 기자재”로 한다.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관리 업무와 온실가스 등 환경 관련 업무를 구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위원회 회의방식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온실가스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개정함(제3조).
- 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정비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비함(제7조).
- 라.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자동해산 규정을 신설함(제9조).
- 마. 에너지 센터 수행사업을 정비함(제15조).
- 바.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을 개정함(제16조).
- 사. 변경된 중앙부처명을 현행화함(제2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8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
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한바, 위임 근거 법령을 조례의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에 위임 근거 법령을 명시함(제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8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체조직·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
6.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인체조직·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인체조직·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인체조직·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 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나.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다. 인체조직·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
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와 제4조의6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
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
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헌혈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를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유공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헌혈추진협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추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헌혈추진협회의 구성) ① 협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원
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덕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헌혈 참여 기관의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민

제11조(헌혈추진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나.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라. 헌혈추진협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101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단위 : 명)

직급 · 직렬별		기관별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총 계		814	550	21	53	14	176
총괄	정무직	1	1				
	일반직	810	546	21	53	14	176
	별정직	3	3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10	546	21	53	14	176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6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6	6				
	과학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7	27	3	4	1	12
	행정	12	10	2			
	의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사서·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3					3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서·간호·방송통신	1					1

5급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간호·환경	1					1
	행정·농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6급	소계	192	147	5	11	3	26
	행정	66	55	4			7
	세무	10	10				
	전산	2	2				
	사회복지	13	11				2
	사서	4	4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1	1				
	보건	1	1				
	의료기술	1			1		
	간호	2			2		
	시설	11	10			1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행정·세무	9	5				4
	행정·사회복지	17	5				12(4)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3	2			1	
	행정·보건	4	3		1		
	행정·환경	6	5				1
	행정·시설	16	14	1		1	
농업·수의	1	1					
보건·의료기술	1			1			

6급	보건·간호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녹지·환경·시설	1	1				
7급	소계	258	171	11	20	4	52
	행정	101	59	8	1	1	32
	세무	15	15				
	전산	4	4				
	사회복지	37	19				18
	사서	6	6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10	9			1	
	농업	1	1				
	녹지	5	4			1	
	보건	8	5		3		
	의료기술	1			1		
	간호	9			9		
	환경	5	5				
	시설	18	17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1	1				
	운전	5	4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3					

7급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	3				
	사회복지·간호	4	1		1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2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계	239	153	2	15	4	65
	행정	69	37	1	1		30
	세무	11	11				
	전산	4	4				
	사회복지	48	24				24
	사서	2	2				
	방호	1	1				
	공업	5	4			1	
	농업	2	2				
	녹지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3			3		
	간호	5			5		
	환경	5	5				
	시설	25	22			3	
	방송통신	3	2	1			
	시설관리	1	1				
	운전	5	4		1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4	3				1	

8급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6	6				
	사회복지·간호	10					10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9급	소계	66	41	0	2	2	21
	행정	32	16		1		15
	세무	3	3				
	사회복지	6					6
	공업	2	1			1	
	녹지	2	2				
	시설	11	11				
	운전	3	3				
	사무운영	1	1				
	행정·사서	1	1				
	행정·시설	3	2			1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별정직 계		3	3				
별정직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일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일반직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 6급: 191명 → 192명(1명 증가)
- ▶ 7급: 253명 → 258명(5명 증가)
- ▶ 8급: 231명 → 239명(8명 증가)
- ▶ 9급: 80명 → 66명(14명 감소)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 ▶ 본청 549명 → 550명(1명 증가)
- ▶ 의회사무과 22명 → 21명(1명 감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전 석 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문)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

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검토)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연구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출된 연구(검토) 완료 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소관 위원장과”를 “소관 전문위원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록관리) 의장은 자문위원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완료했을 때에는 연구 결과물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수당 등)”을 “(자문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를 “제8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는”으로, “수당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문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가 주관한 회의 참석과 의정자문 활동을 위해 참석할 경우 위원의”를 “조례에 따른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구검토 지시서에 의거 연구승인을 받은 자문위원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검토) 지시를 받은 자문위원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촉관련구비서류)”를 “(위촉관련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위촉”을 “자문위원 위촉”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위원”을 “의장은 자문위원”으로, “때에는”을 “때에”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완수하여야”를 “완수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회장 전 석 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1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을 “연구직렬 공무원이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가산점 대상 자격증은 별표 21과 같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총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을 부여한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배점은 별표 23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별표 2,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7, 별표 23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27조의3 및 별표 2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산업기사 :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정 비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지 적	<p>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측 지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설 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p>
	방재안전	<p>방재안전</p>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p>통 신 사</p> <p>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통신기술	<p>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 술	<p>기 능 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p>	
조 리	조 리	<p>기 능 장 : 조리</p> <p>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p>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위 생	사 역	<p>기 능 사 : 환경기능사</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p>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
 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작업상담사 (10)	공인노무사(3) 작업상담사(6)	공인노무사 작업상담사(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 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입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선동위(특수) 원소추진법(특수) 방사선취급(5) 방사선취급(5) 임상심리사1급(7)	입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1급)(3) 임상심리사1급(3)	입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입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입상병리사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 (삭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교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구관	
		연	구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학	기술사(화학,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학,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토	목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재난관리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	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	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	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	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농	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기능장(전자)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 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 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 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 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응급구조사2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제)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지반)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계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정)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기계	<p>기 능 장 :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 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p> <p>간비용 적용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p>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p> <p>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p> <p>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화훼장식</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p> <p>가산비율 적용:</p> <p>농산물품질관리</p> <p>사</p>
	식물검역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p> <p>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안전</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 적용:</p> <p>수의사, 방사성</p> <p>동위원소취급자</p> <p>(일반), 방사선</p> <p>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가</p> <p>축인공수정사</p>
	생명유전	<p>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자격증</p> <p>가산</p> <p>비율 적용 : 방사성</p> <p>동위원소취급자</p> <p>(일반), 방사선</p> <p>취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p> <p>비율 적용 : 나무의</p> <p>사</p>
	산림보호	<p>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 능 사 : 산림</p>	<p>기사자격증</p> <p>가산</p> <p>비율 적용 : 나무의</p> <p>사</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 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의사, 한 의사, 치과의사, 수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방사선 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p>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방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환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수질	<p>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장수시설안전관리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장수시설안전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장수시설운영관리사3급</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능 장 : 산림</p> <p>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p>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도시교통시설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재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 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편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 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편자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업환경	<p>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p>	
	산업곤충	<p>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p>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p> <p>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p>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안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조 경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 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p>	
	수산자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연구	환 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 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재난 관리	<p>기사 : 방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7]

연구직렬 공무원이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연구직·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과 학 기 술 직	
직 령	직 류	직 령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전 기		기 계 운 전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농 업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업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원 예	농 촌 지 도	원 예
원 예			

연구직		과학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공	농촌지도	축산
	공업시설		농업기계	
	농촌지도		농업토목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경영	임업	전직류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공중보건	보건	식품위생	보건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건축		농업토목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과 학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 촌 지 도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충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충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공 학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23]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제27조의3 관련)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비고
1. 제안채택	1-1 담당업무관련 중앙제안 채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	
	1-2 담당업무관련 시(의회)제안 채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1.5점 1.2점 0.9점 0.6점 0.3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	
2.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 기여	2-1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억원 이상 •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점 이내 1.0점 이내 0.5점 이내	○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에 기여하여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그 실적이 인정된 경우 다만, 격려금 대상자는 제외	
3. 업무추진 우수	3-1 특별과제, 현안과제, 협업행정, 업무개선 탁월 등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여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업무추진 우수자로 추천,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3.0점 이내	○ 업무추진에 직접 기여한 실질적 기여자 최대 2인까지 인정 ○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3-2 전국단위 소관업무평가 결과 기관포상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우수상 	0.7점 이내 0.5점 이내	○ 관행적 표창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업무평가 결과에 한함 ○ 당해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실질적 기여자 2인까지 해당	
	3-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사람	0.5점 이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의 기여도 심사	

가산점항목	부 여 기 준	배 점	산 정 방 법	비고
4. 격무업무 우수근무자	4-1 격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 난이도 A • 난이도 B	0.7점 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설문을 통해 격무업무 선정 후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격무업무단위(인원) 및 가점 결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0.7점 또는 0.5점으로 결정) ○ 대상업무 최소 근무기간 : 1년 이상 (각 정기평정일 기준)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의 인정여부 심사·결정 	
5. 고 질 적 장기민원 해 결 기 여 자	5-1 고질적인 집단·장기민원 해결에 크 게 기여한 사람 • 협의·설득을 통한 민원종료 • 민원해결과정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특별대책 시행 등)	1.0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이상 장기화된 민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민원 ○ 평정기간 전부터 연속된 경우 최종 심사시 인정(실질적 기여자 1인만 인정)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한 심사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시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
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2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분청 보좌·보조기관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직종별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합 계	550			550	
기 획 실	21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9	행정8, 전산1
			7급	9	행정7, 전산2
			8급	2	행정1, 전산1
감 사 실	8	일반직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4, 세무1
			7급	2	행정1, 시설1
인 구 정 책 과	18	일반직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5, 행정·사회복지2
			7급	6	행정4, 사회복지1, 행정·사서1
			8급	2	행정1, 행정·사서1
			9급	1	행정1
문화관광체육과	17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4	행정3, 행정·시설1
			8급	6	행정4, 시설1, 행정·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미디어홍보과	17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전산1, 공업1, 방송통신1
			7급	7	행정5, 전산1, 방송통신1
			8급	4	행정1, 전산1, 방송통신1, 통신운영1
도서관운영과	22	일반직	5급	1	행정·사서1
			6급	5	사서4, 행정·사서1
			7급	10	행정1, 사서6, 행정·사서3
			8급	4	전산1, 사서2, 행정·사서1
			9급	2	사무운영1, 행정·사서1

운 영 지 원 과	37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9	행정7, 운전1, 행정·시설1
			7급		12	행정6, 세무1, 공업1, 운전2, 방호1, 행정·전산1
			8급		6	행정4, 운전1, 행정·시설1
			9급		3	행정3
		별정직	5급상당		1	비서
			6급상당		1	비서
7급상당			1	비서		
자 치 행 정 과	18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시설2
			7급		4	행정3, 행정·시설1
			8급		5	행정5
			9급		2	행정2
세 정 과	22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7	세무4, 행정·세무3
			7급		7	세무7
			8급		5	세무4, 전산1
			9급		2	세무2
세 원 관 리 과	22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7	세무5, 행정·세무2
			7급		7	세무7
			8급		6	세무6
			9급		1	세무1
공 감 민 원 과	15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5	행정4, 전산1
			8급		5	행정3, 운전1, 사무운영1
			9급		1	행정1

통합돌봄과	14	일반직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간호1
			7급	6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8급	1	사회복지1
생활보장과	29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간호1
			7급	8	사회복지8
			8급	13	사회복지11, 행정·사회복지2
			9급	1	행정1
어르신장애인과	17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시설1
			7급	4	행정1, 사회복지1, 시설1, 행정·사회복지1
			8급	7	행정1, 사회복지6
가족친화과	25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7급	9	행정3, 사회복지6
			8급	8	행정2, 사회복지6
			9급	1	행정1
경제과	23	일반직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5, 시설1, 행정·공업1, 행정·공업·환경1
			7급	7	행정4, 공업2, 행정·공업1
			8급	3	행정2, 행정·공업1
			9급	3	행정2, 공업1
환경과	22	일반직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6	행정1, 행정·환경4, 행정·공업·환경1
			7급	7	행정1, 환경3, 행정·환경1, 공업·환경1, 공업·시설1
			8급	7	환경3, 행정·환경4
			9급	1	행정1
자원농생명과	20	일반직	5급	1	행정·농업·보건·환경1
			6급	5	행정1, 농업1, 행정·농업1, 행정·환경1, 농업·수의1
			7급	5	행정1, 농업1, 환경2, 농업·수의1
			8급	9	행정2, 농업2, 환경2, 시설1, 행정·농업1, 행정·환경1
위생과	15	일반직	5급	1	행정·보건1
			6급	4	보건1, 행정·보건3
			7급	6	행정1, 보건5
			8급	4	보건3, 행정·보건1

도시계획과	25	일반직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1
			6급	4	시설2, 행정·시설2
			7급	7	행정1, 시설5, 공업·시설1
			8급	10	행정1, 시설7, 행정·시설2
			9급	2	시설2
공원녹지과	18	일반직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녹지1, 행정·녹지2, 공업·녹지·환경·시설1
			7급	6	행정1, 녹지4, 운전1
			8급	5	녹지3, 환경·시설1, 녹지·시설1
			9급	2	녹지2
주택경관과	20	일반직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1, 행정·시설4
			7급	2	시설2
			8급	6	행정2, 시설4
			9급	6	시설5, 행정·시설1
신청사건립과	12	일반직	5급	1	행정·시설1
			6급	3	시설1, 행정·공업1, 행정·공업·시설1
			7급	3	행정1, 공업1, 시설1
			8급	4	행정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9급	1	시설1
재난안전과	21	일반직	4급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공업·시설1
			6급	6	행정2, 시설1, 행정·시설2, 행정·시설·방재안전1
			7급	5	행정3, 시설1, 방재안전1
			8급	8	행정2, 공업1, 방호1, 행정·전산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1
건설과	27	일반직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2, 행정·공업1
			7급	8	행정2, 시설2, 공업3, 행정·시설1,
			8급	7	행정1, 시설4, 공업1, 행정·시설1
			9급	7	행정1, 시설2, 운전3, 시설·방재안전1
교통과	28	일반직	5급	1	행정·공업·시설1
			6급	4	행정1, 행정·시설1, 행정·공업1, 공업1
			7급	11	행정5, 공업2, 시설1, 운전1, 행정·세무1, 시설관리1
			8급	11	행정3, 세무1, 시설1, 공업1, 운전2, 시설관리1, 행정·공업2
			9급	1	행정1
토지정보과	17	일반직	5급	1	행정·시설1
			6급	4	시설3, 행정·시설1
			7급	4	행정1, 시설3
			8급	5	행정1, 시설3, 행정·시설1
			9급	3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별표 2]

의회사무과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직종별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합 계	21			21	
의 회 사 무 과	21	일반직	5급	3	행정2, 행정·공업·농업·시설1
			6급	5	행정4, 행정·시설1
			7급	11	행정8, 속기1, 운전1, 사무운영1
			8급	2	행정1, 방송통신1

[별표 3]

직속기관(보건소)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3항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직종별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합 계	53			53	
보 건 행 정 과	27	일반직	4급	1	과학기술서기관1
			5급	3	의무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6급	5	운전1, 행정·보건1, 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2
			7급	11	행정1, 보건3, 의료기술1, 간호3, 간호조무1,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8급	7	행정1, 보건2, 의료기술2, 운전1, 행정·공업1
건 강 정 책 과	26	일반직	5급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1
			6급	6	간호2, 의료기술1,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2
			7급	9	간호6, 사회복지·간호1, 보건·간호1, 의료기술·간호1
			8급	8	보건1, 의료기술1, 간호5, 보건·의료기술1
			9급	2	행정1, 보건·의료기술1

[별표 5]

동 행정복지센터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제5항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직종별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합 계	176			176	
오 정 동	15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녹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7	행정3, 사회복지3, 사회복지·간호1
			9급	1	행정1
대 화 동	12	일반직	5급	1	행정·공업·간호·환경1
			6급	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9급	1	행정1
회 덕 동	15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사회복지·간호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비 래 동	15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사회복지·간호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송 촌 동	16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1
			6급	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9급	2	행정2
중 리 동	18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1
			6급	3	사회복지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3, 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8급	7	행정3,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9급	1	사회복지1

법 1 동	14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사서·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법 2 동	17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1
			6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7	행정3, 사회복지3, 사회복지·간호1
			9급	1	사회복지1
신 탄 진 동	14	일반직	5급	1	행정·농업·간호·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사회복지·간호1
			9급	2	행정2
석 봉 동	14	일반직	5급	1	행정·사서·간호·방송통신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3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덕 암 동	15	일반직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
			6급	2	행정·사회복지1, 행정·환경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9급	2	행정2
목 상 동	11	일반직	5급	1	행정·공업·보건·환경1
			6급	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2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회복지·간호1
			9급	1	행정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 대응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부서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의 정원 및 내용을 조정함(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 통합돌봄과: 13명 → 14명
 - 의회사무과: 22명 → 21명
 - 보건행정과: 28명 → 27명
 - 건강정책과: 25명 → 26명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4. 10. ~ 4. 30. (20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5. 1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

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5. 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5. 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김*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388번길 7, 10*호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0 (400,000)	폐문부재
강*형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78번길 9*	불법소각	500,000 (400,000)	폐문부재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박*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2길 6*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이*미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545-*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이사불명

[별첨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 20*동 1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신고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4. 10. ~ 2026. 4. 24.(15일간)
2.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제6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주식회사 엠알오무역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158번길 19, 1층,2층 (오정동)	사업자등록폐업 (2020. 8. 31.)	직권말소
	베스트 윈스토어 주식회사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78번길 9, 1층 (신탄진동)	사업자등록폐업 (2024. 6. 30.)	직권말소
	폴드하우스(주)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39-5, 1층 (대화동)	사업자등록폐업 (2025. 5. 21.)	직권말소
	청완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14번길 25, 가동 (오정동)	사업자등록폐업 (2025. 10. 1.)	직권말소

4. 고지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

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덕구 위생과 식품유통팀 ☎ 042-608-6963. 끝.